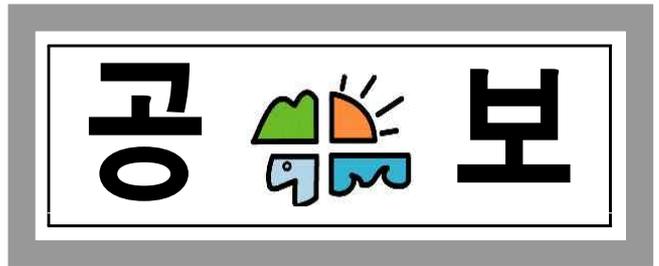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14호 2012년 7월 30일(월)

조 례

-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14
-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1

규 칙

- 속초시 통반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28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302호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 소재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다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연도마다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 신설 〉</p>	<p>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등이 그 다음 연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1항 각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p>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303호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통·반설치조례”를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으로 한다.

제2조중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
하게 전달하고”로 한다.

제3조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30~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
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9개 반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
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반장의 임명·해임)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연임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

④ 통장·반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3. 타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 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때
5.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통·반이 통폐합 되었을 때

⑤ 해임된 통장을 새로이 임명하려면 해임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회 공익활동 협조지원
6.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통, 반장”을 “통장·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통, 반장”을 “통장·반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 본문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반장”을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반장”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항 제1호 및 제4호중 “년 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항 제3호 및 제4호·제6호중 “통·반장”을 “통장·반장”으로 하고, 같은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조중(기존의 제7호)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7. 통장·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비, 수련회·체육대회·통장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비 및 참여비 지원

제13조중 제1항 및 제2항·제3항중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통장활동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임명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공포 이전 통·반 구획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통·반은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직 중인 통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는 그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p> <p>제3조(구획기준) (생략)</p> <p>1. 도시지역의 반은 5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2. 통은 5-9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통·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p> <p>② 통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p> <p>1.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6월이상 거주한 30세~67세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이 위촉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p> <p>제3조(구획기준) (현행과 같음)</p> <p>1. 반은 30~6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2. 통은 4~9개 반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민집단주거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통장·반장의 임명·해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p> <p>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p>

2. 반장은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거주한 20세~67세인 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신설>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 통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 주민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농촌지역 자연마을의 경우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해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반장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신규 임명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연임횟수에 상관없이 재임명 할 수 있다.

④ 통장·반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및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3. 타 지역으로 전출(주민등록 또는 실제 전출) 하였을 때
4.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임무 수행 상태가 지극히 불량한 때

<신설>

제7(임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 홍보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① 통,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 제공) ① 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5.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통·반이 통폐합 되었을 때

⑤ 해임된 통장을 새로이 임명하려면 해임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제7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각종 사회 공익활동 협조지원
6. 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9.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0.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① 통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편의 제공) ① 통장·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동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통·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반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기양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년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2. 통장 안심보험 보장
3.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4. 년 1회 통·반장 정보화 교육
5. 통장증 발급
6. 통·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② 시장은 통·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기양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2. 통장 안심보험 보장
3. 통장·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4. 연 1회 통장·반장 정보화 교육
5. 통장증 발급
6. 통장·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
7. 통장·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각종 교육비, 수련회 체육대회, 통장 한마음대회 등의 행사비 및 참여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통장활동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사항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통장을 재임명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다만,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304호

속초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속초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방안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방안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사항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을 고려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같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속초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정보화 부서의 장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3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관리담당이 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의 총괄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시 지역정보화 정책과 기관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시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

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속초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30일

속초시조례 제2305호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속초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
은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
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이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 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

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와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선발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전담 TF팀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휴일 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 점검반) ①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

원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다시 조사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속초소방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및 속초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 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스마트폰, 인터넷 SNS
2. 전광판, 현수막, 속초소식지, 전단지
3. 차량이용방송,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통·반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용 생 인

2012년 7월 30일

속초시규칙 제1291호

속초시 통·반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

속초시 통·반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통·반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신설되거나 임기 중 해임된 경우에는 통장이 공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통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통장 모집공고를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대,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4조(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지원신청서를 접수한 통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올려야 한다.

제5조(통장지원자 심사) ① 통장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통장 임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동장이 채점한다.

③ 2항의 심사결과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 대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 점수, 통장전담여부, 거주기간, 봉사활동,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통장 임명·해임) ① 통장을 임명(재임명을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장을 해임하는 때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통장 임명·해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반모임 운영) ① 반모임은 통장·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반모임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자치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방범신고망 운영
5.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반모임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모임 운영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모임기록부를 작성하고 유지하며, 경미한 민원사항 등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통장활동의 평가) ①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통장의 활동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내용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② 통장평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속초시 ○○동 공고 제 호

통장모집공고

모집대상

- 통 명 : 제 통
- 관할구역 :
- 사 유 :

자격요건

- 통 관할구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거주 하는 사람
- ※ 지원연령 : 제한없음

제출서류

- 통장지원신청서 1부 (주민센터 내 비치)
- 자기소개서 1부
- 그 밖에 주요경력 증빙서류

공고기간 : . . . - . . .

접수기간 :

문의사항 :

○ ○ 동 장

통 장 지 원 신 청 서

사진
(3×4cm)

성 명	한 글 :	성 별	남 · 여		
	한 자 :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우편번호(-)		거주기간		
	속초시		. . . ~ 현재(년 월)		
직 업	직업명 : (직급, 근무처, 업무내용 등 구체적으로)		최종학력		
	영업장·근무지 (자영업의 경우)		전화번호 	자 택 : (사무실) : 휴대폰 : E-mail :	
	統 관내	洞 관내			기타
학력 및 주요경력					
년·월·일	내 용			비고	
통장 및 단체 경력					
단체명(직위)	경력기간			비고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내역					
훈격(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 고	

1.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에, 동 제 통장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동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심 사 기 준 표

□ 심사대상자(대상지역 : 동 통)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 대 폰		

□ 심사기준 및 결과(기준일 :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비율)	점수기준	배점	득점	비고
1. 통 관할 구역 내 계속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주민등록 기준
	8년 이상 ~ 10년 미만	18		
	6년 이상 ~ 8년 미만	16		
	4년 이상 ~ 6년 미만	14		
	4년 미만	12		
2. 통장전담가능 여부 (30%)	통장전담가능	30		영업장 기준
	자영업(통 관내)	25		
	자영업(동 관내)	20		
	자영업(동 관외)	15		
	기타	10		
3. 봉사활동 시간 (15%)	90시간 이상	15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봉사시간. 단 속초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시간
	90시간 미만	12		
	60시간 미만	9		
	30시간 미만	6		
4. 행정기관 상훈 (5%)	장관상 이상	5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
	시장상	3		
	기타	1		
5. 면접심사 (30%)	탁월	25~30		주민 신망도 및 사명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15~24		
	보통	1~14		
총 계		100		
확인자	○○동장 ○○○ (서명)			

제 호

임 명 장

주 소 : 속초시

성 명 :

임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를 속초시 동 제 통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별지 제7호 서식】

반모임 기록부

○ 날짜 : 년 월 일			반장	확인
○ 반명 : 통 반				
참석 상황	대상인원	참석인원	불참인원	비고
토의·결정 사 항				
건의사항				
처리사항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 별	통	반	비 고
총	214	1,100	
영랑동	13	67	
동명동	15	78	
금호동	30	145	
교 동	37	202	
노학동	48	261	
조양동	40	219	
청호동	16	65	
대포동	15	63	

명칭			구역			
행정동	통	반	법정동	번지	세부구역	
영랑동	제 1 통	제 1 반	영랑동	15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0-3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13-5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31-1	일원	
영랑동	제 2 통	제 1 반	영랑동	131-37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7-167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0-10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31-101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31-11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47-73	일원	
영랑동	제 3 통	제 1 반	영랑동	147-10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8-44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7-35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48-10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48-9	일원	
영랑동	제 4 통	제 1 반	영랑동	327-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00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200 동현아파트101동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201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202	일원	

영랑동	제 5 통	제 1 반	영랑동	144-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48-56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49-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51-3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57 양우비치A동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57 양우비치B동	일원	
영랑동		제 7 반	영랑동	157 양우비치C동	일원	
영랑동	제 6 통	제 1 반	영랑동	148-121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57-16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63-8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63-40	일원	
영랑동	제 7 통	제 1 반	영랑동	209-10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229-10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245-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245-4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229-26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231-2	일원	
영랑동	제 8 통	제 1 반	영랑동	183-3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60-1 송하아파트1,2동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160-1 송하@3동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179-18	일원	
영랑동		제 5 반	영랑동	180-1 대명드림빌@ 1~4호	일원	
영랑동		제 6 반	영랑동	180-1 대명드림빌@ 5~8호	일원	
영랑동	제 9 통	제 1 반	영랑동	570-19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183-5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59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592-1	일원	
영랑동	제 10 통	제 1 반	장사동	577-12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21-1	일원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16-13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540-2	일원	
영랑동	제 11 통	제 1 반	장사동	632-33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632-42	일원	
영랑동		제 3 반	장사동	632-121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632-152	일원	
영랑동		제 5 반	장사동	632-208	일원	
영랑동		제 6 반	장사동	634-55	일원	

영랑동	제 12 통	제 1 반	영랑동	635-13 삼성맨션	일원	
영랑동		제 2 반	영랑동	634-48/635-47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640-4	일원	
영랑동		제 4 반	장사동	600	일원	
영랑동		제 5 반	장사동	518-7 우림연립 가,라,마동	일원	
영랑동		제 6 반	장사동	518-7 우림연립 나,다동	일원	
영랑동	제 13 통	제 1 반	장사동	84-2	일원	
영랑동		제 2 반	장사동	237	일원	
영랑동		제 3 반	영랑동	228	일원	
영랑동		제 4 반	영랑동	255	일원	
동명동	제 1 통	제 1 반	동명동	1-20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1-148	영금정아파트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1-13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1-133	일원	
동명동	제 2 통	제 1 반	동명동	3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3-15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117-1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66-1	일원	
동명동	제 3 통	제 1 반	동명동	89-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341-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349-3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42-1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362	일원	
동명동	제 4 통	제 1 반	동명동	450-7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50-5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50-25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50-4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266-1	일원	
동명동	제 5 통	제 1 반	동명동	253-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280-3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258-1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06-2	일원	
동명동	제 6 통	제 1 반	동명동	450-140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382-1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396-6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391-4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66-12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466-42	설악센트리움 일원	

동명동	제 7 통	제 1 반	동명동	459-1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50-148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50-238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43-1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50-302	일원	
동명동	제 8 통	제 1 반	동명동	465-19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85-4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89-2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30-10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39-32	일원	
동명동	제 9 통	제 1 반	동명동	450-123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25-2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261-2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59-2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261-67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52-2	일원	
동명동	제 10 통	제 1 반	동명동	524-1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427-5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434-1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450-215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435-1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450-289	일원	
동명동	제 11 통	제 1 반	동명동	437-5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30-18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30-39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30-36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30-51 529	동명연립 대명빌라	동명연립가, 다101~303 나101~104,201~203, 301~304 대명빌라101~305, 대명빌라101~305
동명동	제 12 통	제 1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손(4호까 지)	101~601호, 102~1002호 103~1303호, 104~1304호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4	설악타워맨손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4-1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3-46	일원	
동명동	제 13 통	제 1 반	동명동	513-92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3-79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3-93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3-110	성우연립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12-53	중앙연립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13-139	일원	

동명동	제 14 통	제 1 반	동명동	566-7	일원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67	일원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67-2	일원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77-10	일원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95-15	일원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79-2	일원	
동명동	제 15 통	제 1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1호~1501호, A동102호~1502호
동명동		제 2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3호~1503호, A동104호~1504호
동명동		제 3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A동105호~1505호, A동106호~1506호 A동107호~1507호
동명동		제 4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B동101호~107호, B동201호~207호 B동301호~307호, B동401호~407호
동명동		제 5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B동501호~507호, B동601호~607호 B동701호~707호, B동801호~807호 B동901호~906호
동명동		제 6 반	동명동	512	대명5차아파트	
금호동	제 1 통	제 1 반	중앙동	468-15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68-2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68-27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6-12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68-34	일원	
금호동	제 2 통	제 1 반	중앙동	478-38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9-2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81-2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82-289	일원	
금호동	제 3 통	제 1 반	중앙동	479-18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9-75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3-29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3-70	일원	
금호동	제 4 통	제 1 반	중앙동	475-5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5-7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68-15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69-4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71-50	일원	

금호동	제 5 통	제 1 반	중앙동	473-13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2-11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1-4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72-44	일원	
금호동	제 6 통	제 1 반	중앙동	49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4-7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501-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88-85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6-57	영보주택 일원	
금호동	제 7 통	제 1 반	중앙동	471-3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71-22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71-53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3-88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3-90	일원	
금호동	제 8 통	제 1 반	중앙동	493-1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7-4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7-76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7-81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493-10	일원	
금호동	제 9 통	제 1 반	중앙동	493-142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7-56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3-131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8-51	일원	
금호동	제 10 통	제 1 반	중앙동	496-39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503-2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503-140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501-9	일원	
금호동		제 5 반	중앙동	503-35	일원	
금호동	제 11 통	제 1 반	중앙동	498-37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498-17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496-49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496-11	일원	
금호동	제 12 통	제 1 반	중앙동	503-10	일원	
금호동		제 2 반	중앙동	623-14	일원	
금호동		제 3 반	중앙동	622-25	일원	
금호동		제 4 반	중앙동	623-44	아리랑빌라 일원	
금호동	제 13 통	제 1 반	금호동	482-108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2-10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2-148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2-279	일원	

금호동	제 14 통	제 1 반	금호동	482-202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4-12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4-3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4-14	일원	
금호동	제 15 통	제 1 반	금호동	479-3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73-6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73-124	일원	
금호동	제 16 통	제 1 반	금호동	489-102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9-79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9-22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9-29	일원	
금호동	제 17 통	제 1 반	금호동	488-16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20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257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28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489-6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489-14	일원	
금호동	제 18 통	제 1 반	금호동	492-31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90-9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124	일원	
금호동	제 19 통	제 1 반	금호동	488-328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32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51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488-187	일원	
금호동	제 20 통	제 1 반	금호동	488-109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488-7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488-68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488-2	일원	
금호동	제 21 통	제 1 반	금호동	625-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502-31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502-33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502-17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144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210	일원	
금호동	제 22 통	제 1 반	금호동	622-91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2-188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3-40	대명빌라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116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512-26	효성빌라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2-43	일원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2-263	일원	

금호동	제 23 통	제 1 반	금호동	621-135	일원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1-30	일원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1-71	일원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180	일원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1-159	일원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1-106	설악연립주택	가동101~205호, 나동101~205호 다동101~202호
금호동	제 24 통	제 1 반	금호동	625-42	금호연립	가동101~205호, 나동101~205호 다동101~205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5-42	금호연립	라동101~205호, 마동101~205호 바동101~203호, 사동101~202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1동101~305호,2동101~305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3동101~305호,5동101~305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88	성진연립	6동101~305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108	성진연립	7동101~305호,8동101~305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5-108	성진연립	9동101~307호
금호동	제 25 통	제 1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1~2층)	101~211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3~4층)	301~411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5~6층)	501~611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7~8층)	701~811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5	속초대명타워맨션2차 아파트(9~10층)	901~1010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5-200	성진연립	10동101~307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5-200	성진연립	11동101~307호
금호동	제 26 통	제 1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1 동(1~5층)	101~506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1 동(6~10층)	601~1006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1 동(11~15층)	1102~1506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2 동(7~8호)	107~1507호, 108~1508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2 동(9~10호)	109~1509호, 110~1510호
금호동		제 6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2 동(11~12호)	111~1511호, 112~1512호
금호동		제 7 반	금호동	622-66	서울대명2차아파트2 동(13~14호)	113~1513호, 114~1014호

금호동	제 27 통	제 1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1~3층	101~311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4~6층	401~611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7~9층	701~910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05-3	금호로알아파트10~15층	1001~1509호
금호동	제 28 통	제 1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1동	102~1503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2동	101~1503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3동	101~1506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4동	101~1504호
금호동	제 29 통	제 1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5동	101~1502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6동	101~1506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27	속초e-편한세상아파트 107동	101~1504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29	보람레이크더하임101동	101호~1503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29	보람레이크더하임102동	101호~1504호
금호동	제 30 통	제 1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1동	101~1803호
금호동		제 2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2동	101~1903호
금호동		제 3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1~2호)	101호~1801호, 102호~1802호
금호동		제 4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3~4호)	103호~1903호, 104호~1904호
금호동		제 5 반	금호동	630	생모리츠아파트103동 (5~6호)	105호~1805호, 106호~1806호
교 동	제 1 통	제 1 반	청학동	482-199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6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62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69	일원	
교 동	제 2 통	제 1 반	청학동	482-44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32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14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220	일원	
교 동	제 3 통	제 1 반	청학동	482-309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2-30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2-297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2-385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2-312	일원	

교 동	제 4 통	제 1 반	청학동	644-3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4-11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4-119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3-20	일원	
교 동	제 5 통	제 1 반	청학동	483-16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3-15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6-216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6-16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6-165	일원	
교 동	제 6 통	제 1 반	청학동	486-141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6-8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44-1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6-54	일원	
교 동	제 7 통	제 1 반	청학동	642-74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42-44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42-5	대명맨션408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42-5	대명맨션303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4-44	일원	
교 동	제 8 통	제 1 반	청학동	486-154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4-58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4-98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4-8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4-11	일원	
교 동	제 9 통	제 1 반	청학동	487-52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487-16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487-91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487-20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487-33	일원	
교 동	제 10 통	제 1 반	청학동	633-51	일원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3-139	일원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3-129	일원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3-109	일원	
교 동		제 5 반	청학동	631-1	일원	
교 동	제 11 통	제 1 반	청학동	632-30	금강아파트A동	101호~504호
교 동		제 2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A동	105호~506호, 101호~502호, 103호~506호
교 동		제 3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B동	103호~506호
교 동		제 4 반	청학동	632-31	금강아파트C동	107호~508호, 102호~503호
교 동	제 12 통	제 1 반	교동	664-207	일원	
교 동		제 2 반	교동	664-130	일원	
교 동		제 3 반	교동	664-129	일원	
교 동		제 4 반	교동	664-223	일원	

교 동	제 13 통	제 1 반	교 동	664-67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64-61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64-102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64-21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64-28	일 원	
교 동	제 14 통	제 1 반	교 동	482-264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482-289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482-326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482-298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482-264	일 원	
교 동	제 15 통	제 1 반	교 동	644-6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44-19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44-24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45-28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58-65	일 원	
교 동	제 16 통	제 1 반	교 동	636-77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54-133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53-3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54-107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54-92	일 원	
교 동	제 17 통	제 1 반	교 동	655-53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54-78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55-62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27-249	일 원	
교 동	제 18 통	제 1 반	교 동	636-4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28-77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36-55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36-12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36-96	일 원	
교 동		제 6 반	교 동	635-3	제 일 연립	가 동
교 동		제 7 반	교 동	635-3	제 일 연립	나 동, 제 일 상 가
교 동	제 19 통	제 1 반	교 동	627-100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55-47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780-92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27-56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55-13	일 원	
교 동		제 6 반	교 동	627-141	일 원	
교 동	제 20 통	제 1 반	교 동	628-100	일 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627-13	일 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628-137	일 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627-224	일 원	
교 동		제 5 반	교 동	627-230	일 원	

교 동	제 21 통	제 1 반	교 동	780-48	일원	
교 동		제 2 반	교 동	780-106	일원	
교 동		제 3 반	교 동	780-88	일원	
교 동		제 4 반	교 동	780-288	일원	
교 동	제 22 통	제 1 반	교 동	627-135	속초대명1차A	101호~308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627-135	속초대명1차A	401호~608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627-135	속초대명1차A	701호~1006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627-135	속초대명1차A	1101호~1506호
교 동	제 23 통	제 1 반	교 동	628-1	서울대명A	1021호~1511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628-1	서울대명A	913호~1111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628-1	서울대명A	513호~713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628-1	서울대명A	101호~613호
교 동	제 24 통	제 1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1동	101호~405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1동	501호~805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2동	
교 동		제 4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3동	101호~405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3동	501호~805호
교 동		제 6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101호~405호
교 동		제 7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501호~805호
교 동	제 25 통	제 1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101호~305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5동	401호~605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6동	101호~305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6동	401호~605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7동	101호~405호
교 동		제 6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7동	501호~805호
교 동		제 7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8동	
교 동		제 8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09동	
교 동	제 26 통	제 1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0동	
교 동		제 2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1동	
교 동		제 3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2동	101호~405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2동	501호~805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3동	101호~405호
교 동		제 6 반	교 동	898	주공2차아파트213동	501호~805호
교 동	제 27 통	제 1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4동	101호~405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4동	501호~805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5동	101호~605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5동	701호~1005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6동	
교 동		제 6 반	교 동	903	주공2차아파트217동	
교 동	제 28 통	제 1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1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1동	103호~1304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6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7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8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3동	105호~1306호
교 동		제 9 반	교 동	781-6	현대2차아파트204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9 통	제 1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1호~14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3호~14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5호~14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1동	107호~1408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7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30 통	제 1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3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1호~1502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3호~1504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7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4동	107호~1508호
교 동		제 8 반	교동	619-33	설악현대아파트109동	101호~902호
교 동	제 31 통	제 1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1호~1502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3호~1504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5호~1506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1동107호~1508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2동101호~15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2동103호~1504호, 상가
교 동		제 7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1호~1502호
교 동		제 8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3호~1504호
교 동		제 9 반	교동	620-13	럭키설악타운2차아파트	103동105호~1506호
교 동	제 32 통	제 1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01호~311호
교 동		제 2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401호~611호
교 동		제 3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701호~911호
교 동		제 4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001호~1211호
교 동		제 5 반	교동	627-306	속초대명3차아파트	1301호~1511호
교 동	제 33 통	제 1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1동	
교 동		제 2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1호~1202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3호~1404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2동	105호~1506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1호~1402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3호~1604호
교 동		제 7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3동	105호~2106호
교 동	제 34 통	제 1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4동	
교 동		제 2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5동	101호~1802호
교 동		제 3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5동	103호~2104호
교 동		제 4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1호~1802호
교 동		제 5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3호~1804호
교 동		제 6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7동	105호~2106호
교 동		제 7 반	교동	781-1	동부아파트108동	

교 동	제 35 통	제 1 반	교 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1호~1702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3호~1704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5호~1706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7호~1908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781-1	동부아파트106동	109호~1810호
교 동	제 36 통	제 1 반	교 동	620	협성아파트	101호~218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620	협성아파트	301호~418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620	협성아파트	501호~618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620	협성아파트 장미아트빌주택일원	701호~1003호
교 동	제 37 통	제 1 반	교 동	781-42	옥토아파트	101호~1802호
교 동		제 2 반	교 동	781-42	옥토아파트	103호~1805호
교 동		제 3 반	교 동	781-42	옥토아파트	106호~807호
교 동		제 4 반	교 동	781-42	계명아파트	101호~312호
교 동		제 5 반	교 동	781-12	계명아파트	401호~612호
교 동		제 6 반	교 동	781-12	계명아파트	701호~1205호
노 학 동	제 1 통	제 1 반	교 동	674-32	일원	
노 학 동		제 2 반	교 동	690-15	일원	
노 학 동		제 3 반	교 동	658-8	일원	
노 학 동		제 4 반	교 동	762-1	일원	
노 학 동		제 5 반	교 동	737-7	일원	
노 학 동	제 2 통	제 1 반	교 동	767-93	일원	
노 학 동		제 2 반	교 동	767-204	일원	
노 학 동		제 3 반	교 동	767-213	일원	
노 학 동		제 4 반	교 동	767-36	일원	
노 학 동		제 5 반	교 동	767-187	일원	
노 학 동		제 6 반	교 동	767-47	일원	
노 학 동		제 7 반	교 동	767-221	프레지던트인텔빌라 만천빌라	
노 학 동	제 3 통	제 1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B동	1호~4호
노 학 동		제 2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B동	5호~7호
노 학 동		제 3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B동	8호~10호
노 학 동		제 4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A동	상가
노 학 동		제 5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A동	1호~3호
노 학 동		제 6 반	교 동		로얄1차아파트A동	4호~6호, 로얄맨션
노 학 동		제 7 반	교 동		로얄빌라	가~다동
노 학 동		제 8 반	교 동		로얄골든아파트	가~다동
노 학 동	제 4 통	제 1 반	교 동		럭키아파트2동	
노 학 동		제 2 반	교 동		럭키아파트3동	
노 학 동		제 3 반	교 동		럭키아파트5동	
노 학 동		제 4 반	교 동		럭키아파트6동	
노 학 동	제 5 통	제 1 반	교 동		럭키아파트1동	상가
노 학 동		제 2 반	교 동		럭키아파트7동	1~4호
노 학 동		제 3 반	교 동		럭키아파트7동	5~7호
노 학 동		제 4 반	교 동		럭키아파트8동	1~3호
노 학 동		제 5 반	교 동		럭키아파트8동	5~7호

노학동	제 6 통	제 1 반	교동	804-83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99-77	현대골든빌라,한솔빌라	
노학동		제 3 반	교동	799-135	우성아트빌라가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800-56	우성아트빌라나동,한솔빌라2차	
노학동	제 7 통	제 1 반	교동	741-7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657-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43-22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43-31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43-39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43-41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910-5	일원	
노학동	제 8 통	제 1 반	교동	657-37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657-53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657-19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656-17	국민주택	가동, 나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양코스모스연립	가, 나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양코스모스연립	다, 라동
노학동	제 9 통	제 1 반	교동	656-6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73-11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74-45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74-51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79-30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69-32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769-73	일원	
노학동	제 10 통	제 1 반	교동	780-195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780-19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780-58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780-149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780-138	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780-200	일원	
노학동		제 7 반	교동	777-9	금도주택	가, 나, 다동
노학동		제 8 반	교동	777-12	동설악빌라	1동~9동
노학동	제 11 통	제 1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A동	1호~11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B동	1호~12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C동	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2차아파트C동	5호~8호
노학동	제 12 통	제 1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1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1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2동5호~6호

노학동	제 13 통	제 1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3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3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5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럭키설악타운1차아파트	5동5호~6호
노학동	제 14 통	제 1 반	교동		현대아파트	1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아파트상가	1호~3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아파트지하	5호~6호상가동10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1호~2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3호~4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아파트	2동5호~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현대아파트	3동1호~2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현대아파트	3동3호~4호
노학동	제 15 통	제 1 반	교동		현대아파트4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아파트4동3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아파트4동5호~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아파트4동7호~8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아파트5동1호~2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아파트5동3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현대아파트5동5호~6호	
노학동	제 16 통	제 1 반	교동	799-149	거산빌라	
노학동		제 2 반	교동	799-89	동설악빌라	A, B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798-25	현대빌라,교동주택	그린빌라
노학동		제 4 반	교동	799-32	거산빌라2차	
노학동		제 5 반	교동	799-91	일원	
노학동	제 17 통	제 1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101호~215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301호~415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501호~615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701호~815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901호~1015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로얄나하나1차아파트	1101호~1212호
노학동	제 18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101호~50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1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101호~50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2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101호~506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601호~1006호
노학동		제 9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3동1101호~1506호

노학동	제 19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01호~21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301호~41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501호~61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701호~81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901호~101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101호~121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4동1301호~1516호
노학동	제 20 통	제 1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01호~216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301호~41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501호~61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701호~816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901호~1016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101호~121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속초청초아파트	105동1301호~1516호
노학동	제 21 통	제 1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1층~4층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5층~8층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3동9층~12층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4동5호~8호
노학동	제 22 통	제 1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5동5호~8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1층~4층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5층~8층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6동9층~12층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7동4호~6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7동1호~3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삼환아파트	108동
노학동	제 23 통	제 1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301호~2호, 401호~2호, 501호~2호 601호~2호, 701호~2호, 801호~2호 901호~2호, 1001호~2호, 1101호~2 1201호~2호, 130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108호~31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403호~61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703호~911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로얄나하나2차아파트	1003호~1311호
노학동	제 24 통	제 1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4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5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1층~4층
노학동		제 7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5층~8층
노학동		제 8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7동9층~12층
노학동		제 9 반	교동		삼호아파트	106동

노학동	제 25 통	제 1 반	교동	928-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25-1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31	우신빌라,고산빌라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934-5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937-14	우성빌라일원	
노학동		제 6 반	교동	941-7	가야빌라일원	
노학동	제 26 통	제 1 반	교동	769-64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충용아파트	
노학동		제 3 반	교동		근로자아파트	1호~5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근로자아파트	6호~10호
노학동	제 27 통	제 1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1동1호~3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1동4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2동5호~6호
노학동	제 28 통	제 1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3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3동3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4동1호~2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4동3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5동1호~2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현대3차아파트	305동3호~4호
노학동	제 29 통	제 1 반	교동		대우아파트상가	101동1호~2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우아파트	3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2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3동1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4동5호~6호
노학동	제 30 통	제 1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6동1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6동5호~6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7동1호~4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우아파트	107동5호~6호
노학동	제 31 통	제 1 반	노학동	177-1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68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162-2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4 반	노학동	143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5 반	노학동	132-2	도리원마을 일원	
노학동	제 32 통	제 1 반	노학동	278	이목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688	이목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3 통	제 1 반	노학동	338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345-4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616-1	노리마을 일원	동우대학예지원, 한전속초연수원
노학동		제 4 반	노학동	759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5 반	노학동	627-38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6 반	노학동	626-2	노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4 통	제 1 반	노학동	1265-100	응골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478-2	응골마을 일원	
노학동	제 35 통	제 1 반	노학동	856-2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924-3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943-11	척산마을 일원	
노학동	제 36 통	제 1 반	노학동	748-6	도평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753-21	도평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7 통	제 1 반	노학동	1006-74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06-18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746-104	신흥리마을 일원	
노학동	제 38 통	제 1 반	노학동	1011-28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13-38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3 반	노학동	1064	학사평마을 일원	
노학동	제 39 통	제 1 반	노학동	1038-36	자활촌마을 일원	
노학동		제 2 반	노학동	1000-210	자활촌마을 일원	
노학동	제 40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1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1동5호~6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2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2동5호~6호
노학동	제 41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3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1호~4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5호~8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6동9호~10호
노학동	제 42 통	제 1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4동1호~4호
노학동		제 2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4동5호~9호
노학동		제 3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1호~4호
노학동		제 4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5호~8호
노학동		제 5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5동9호~10호
노학동		제 6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1호~4호
노학동		제 7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5호~8호
노학동		제 8 반	교동		대명늘푸른아파트	107동9호~10호

노학동	제 43 통	제 1 반	교동	967-13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65-4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71-7	일원	
노학동		제 4 반	교동	977-17	일원	
노학동		제 5 반	교동	982	일원	
노학동	제 44 통	제 1 반	교동	946-6	일원	
노학동		제 2 반	교동	942-5	일원	
노학동		제 3 반	교동	943-17	속초세무서기숙사	
노학동		제 4 반	교동	943-10	유정빌라	
노학동		제 5 반	교동	943-15	우성빌라	
노학동		제 6 반	교동	949-7	공영빌라	
노학동		제 7 반	교동	950-4	일원	
노학동	제 45 통	제 1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석미아파트	상가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석미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6 통	제 1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1동
노학동		제 2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2동
노학동		제 3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3동
노학동		제 4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4동
노학동		제 5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5동
노학동		제 6 반	교동		명지미래힐아파트	106동
노학동	제47통	제1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1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2동	201호~901호, 202호~1502호 201호~1701호, 102호~1602호 관리사무소일원, 경로당일원
노학동		제2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2동	103호~1503호, 104호~1304호 105호~1205호, 106호~906호, 상가시설일원
노학동		제3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2동	107호~1707호,108호~1708호 109호~1609호, 210호~1510호
노학동		제4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3동	101호~1501호, 102호~1502호
노학동		제5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3동	103호~1703호,104호~1704호 105호~1405호, 103호~806호
노학동	제48통	제1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4동	201호~1201호, 102호~14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노학동		제2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4동	105호~1905호, 106호~1906호 107호~2007호, 108호~2008호
노학동		제3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5동	201호~1501호, 102호~1502호 103호~1503호, 104호~1504호
노학동		제4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6동	101호~1201호, 102호~1202호 103호~1903호,104호~1904호

노학동		제5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6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7동	105호~2005호, 106호~2006호 101호~1101호, 102호~1706호
노학동		제6반	교동		하우스토리아파트107동	103호~2003호, 104호~2004호, 105호~2005호 106호~1506호, 107호~1007호
조양동	제 1 통	제 1 반	조양동	1374	우성연립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57	일원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395	해성아파트가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해성아파트나동	
조양동	제 2 통	제 1 반	조양동	1377-24	설악연립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77-35	조양빌라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군인아파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진덕설악맨션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진덕설악맨션	8층~15층
조양동	제 3 통	제 1 반	조양동	1368-13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365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371-4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1360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1338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1120-2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1535-16	부월리마을	
조양동	제 4 통	제 1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가동	1호~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가동	7호~12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나동	1호~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나동	7호~12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다동	1호~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다동	7호~12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라동	1호~6호
조양동		제 8 반	조양동		동명아파트라동	7호~12호
조양동	제 5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101~311, 401~611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701~911, 1001~1211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1동	1301~1511, 1601~1811호 1901~2011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101~310, 401~610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701~910, 1001~1210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2동	1301~1510, 1601~1710호 1801~2010호
조양동	제 6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01~311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401~611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701~911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001~1211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301~1511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3동	1601~1811호, 1901~2011호

조양동	제 7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101~407, 501~807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901~1207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4동	1301~1607호, 1701~2007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101~311호, 401~611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701~911호, 1001~1211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105동	1301~1511호, 1601~2011호
조양동	제 8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01호~409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501호~809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901호~1209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301호~1609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1동	1701호~1809호,1901호~1904호 2001호~2004호
조양동	제 9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01호~31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401호~61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701호~91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001호~1214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301호~1514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2동	1601호~1814호
조양동	제 10 통	제 1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101호~408호 501호~808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901호~1208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3동	1301호~1608호,1701호~1808호 1904호~1908호, 2004호~2008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101호~408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501호~808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901호~1208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성호아파트204동	1301호~1608호, 1701호~1808호 1901호~1905호, 2001호~2005호
조양동	제 11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1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2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3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2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2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4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5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6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7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3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8동	101호~1202호, 103호~12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8동	105호~12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09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0동	101호~1204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1단지111동	101호~1504호

조양동	제 14 통	제 1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1동	101호~120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7동	101호~6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7동	701호~120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6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6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5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5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15 통	제 1 반	조양동		주양주공2단지202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2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3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3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4동	101호~806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조양주공2단지204동	901호~1506호
조양동	제 16 통	제 1 반	조양동	1522	일원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1524-1	삼우연립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1075	온정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1191-1	온정리마을	
조양동	제 17 통	제 1 반	조양동	636-35	일원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634-27	일원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633-10	일원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633-8	오복연립일원	
조양동	제 18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101동	101호~1204호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102동	101호~1206호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01호~315호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401호~615호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701호~915호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001호~1214호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201동	1301호~1514호
조양동	제 19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3동	1층~7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3동	8층~15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1층~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5층~8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1동	9층~13층
조양동	제 20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4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4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1층~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4층~6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902동	7층~10층
조양동	제 21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4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7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2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5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8동	11층~13층
조양동	제 23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3동	11층~1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1층~4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5층~8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6동	9층~12층
조양동	제 24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2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1동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501동	8층~15층
조양동	제 25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1동	1층~1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2동	1층~15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3동	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4동	1층~1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8동	1층~15층
조양동	제 26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5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6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7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7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1층~7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8층~11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09동	12층~15층
조양동	제 28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1층~5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6층~10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0동	11층~15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1층~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6층~10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1동	11층~15층

조양동	제 29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1층~3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4층~7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8층~11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2동	12층~15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1층~3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4층~7층
조양동		제 7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8층~11층
조양동		제 8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313동	12층~15층
조양동	제 30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3동	9층~13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1층~4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5층~8층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1동	9층~12층
조양동	제 31 통	제 1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2동	1층~6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2동	7층~12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1층~4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5층~8층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부영아파트604동	9층~13층
조양동	제 32 통	제 1 반	조양동	1512-7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989-1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735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733	논산리마을	
조양동	제 33 통	제 1 반	조양동	536-1	청대새마을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614-4	청대새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1동, 9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2동, 8동, 10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3동, 7동, 11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설악빌리지	4동, 5동, 6동
조양동	제 34 통	제 1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1층~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5층~8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9층~12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대명타워아파트	13층~15층
조양동	제 35 통	제 1 반	조양동	485	일원	현대빌라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462	청대리마을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456	청대리마을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344-2	일원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587-3	대명아파트	
조양동	제 36 통	제 1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1~4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5~7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8~11층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산수빌아파트	12~15층
조양동	제 37 통	제 1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2동, 103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쉐르빌아파트	104동~105동

조양동	제 38 통	제 1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3동, 104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코아루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39 통	제 1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1동1층~7층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1동8층~14층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속초청대주공아파트	105동
조양동	제 40 통	제 1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1동
조양동		제 2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2동
조양동		제 3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3동
조양동		제 4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아아파트	104동
조양동		제 5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5동
조양동		제 6 반	조양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6동
청호동	제 1 통	제 1 반	조양동	1447-2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47-29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50-3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43-3	일원	
청호동	제 2 통	제 1 반	조양동	1450-59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50-57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31-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35-3	일원	
청호동	제 3 통	제 1 반	청호동	444-4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444-5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59-119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18-8	일원	
청호동		제 5 반	조양동	1410-8	일원	
청호동	제 4 통	제 1 반	조양동	1480-266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0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80-238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80-187	일원	
청호동	제 5 통	제 1 반	조양동	1490-227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32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90-130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90-208	일원	
청호동		제 5 반	조양동	1490-262	일원	
청호동	제 6 통	제 1 반	조양동	1490-99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6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90-36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90-28	일원	
청호동	제 7 통	제 1 반	조양동	1480-31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90-32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80-116	일원	
청호동		제 4 반	조양동	1480-141	일원	

청호동	제 8 통	제 1 반	조양동	1463-14	일원	
청호동		제 2 반	조양동	1463-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조양동	1463-4	일원	
청호동	제 9 통	제 1 반	청호동	607-1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774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84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915	일원	
청호동	제 10 통	제 1 반	청호동	1080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098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152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107	일원	
청호동	제 11 통	제 1 반	청호동	112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16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195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205	일원	
청호동	제 12 통	제 1 반	청호동	1223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258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278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287	일원	
청호동	제 13 통	제 1 반	청호동	1292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16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325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59-26	일원	
청호동	제 14 통	제 1 반	청호동	459-48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459-70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32-7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33-5	일원	
청호동	제 15 통	제 1 반	청호동	433-26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35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433-93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433-54	일원	
청호동	제 16 통	제 1 반	청호동	1347-5	일원	
청호동		제 2 반	청호동	1351-9	일원	
청호동		제 3 반	청호동	1354-1	일원	
청호동		제 4 반	청호동	1338	일원	
대포동	제 1 통	제 1 반	대포동	925-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798-1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228-5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242	일원	
대포동	제 2 통	제 1 반	대포동	266-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378-1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379-5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318-8	일원	
대포동		제 5 반	대포동	388-1	일원	
대포동		제 6 반	대포동	470-3	일원	
대포동		제 7 반	대포동	381-9	일원	
대포동	제 3 통	제 1 반	대포동	367-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408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348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358-3	일원	
대포동		제 5 반	대포동	415	일원	

대포동	제 4 통	제 1 반	대포동	442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430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431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779	일원	
대포동	제 5 통	제 1 반	대포동	593-9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667-10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517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681	일원	
대포동	제 6 통	제 1 반	대포동	1496-1	일원	
대포동		제 2 반	대포동	1606	일원	
대포동		제 3 반	대포동	1591-1	일원	
대포동		제 4 반	대포동	1621	일원	
대포동	제 7 통	제 1 반	도문동	847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834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832-20	일원	
대포동	제 8 통	제 1 반	도문동	1179	일원	
대포동	제 9 통	제 1 반	도문동	639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536-2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519-4	일원	
대포동	제 10 통	제 1 반	도문동	204-2	일원	
대포동		제 2 반	도문동	244	일원	
대포동		제 3 반	도문동	175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61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59	일원	
대포동		제 6 반	설악동	371-1	일원	
대포동	제 11 통	제 1 반	설악동	170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170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3-3	일원	
대포동	제 12 통	제 1 반	설악동	247-7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253-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246-36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246-119	일원	
대포동	제 13 통	제 1 반	설악동	325-2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342-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2-69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342-22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42-70	일원	
대포동	제 14 통	제 1 반	설악동	347-11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347-35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348-44	일원	
대포동		제 4 반	설악동	348-12	일원	
대포동		제 5 반	설악동	348-2	일원	
대포동		제 6 반	설악동	348-2	일원	
대포동	제 15 통	제 1 반	설악동	341	일원	
대포동		제 2 반	설악동	591-3	일원	
대포동		제 3 반	설악동	804	일원	